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가단2275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1.자로 체결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8. 8. 2. 접수 제300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1.자로 체결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8. 8. 2. 접수 제300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처분 등이 취소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안홍준

별지